

## ! 도급사업 안전보건 자체 점검표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|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점검결과 |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×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협업체<br>구성·운영            | 모든 수급업체(하수급업체포함)를 포함하여 협업체를 구성·운영하고 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협업체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작업장<br>합동·순회<br>점검      | 점검반은 수급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작업장 합동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건설업, 선박 및<br>보트건조업<br>(2월에 1회이상) |
| 안전보건<br>교육지원            | 안전보건 교육체계를 수립하여 지도·지원하고 교육장소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작업환경<br>측정              |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였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보<br>운영사항              | 발파작업, 화재 및 토석붕괴 사고 대비 경보운영 체계를 수립·운영하고 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급인과 그 근로자가 경보 내용을 통보받고 숙지하고 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안전보건<br>조치              |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(산안법 제29조 제3항)에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유해·위험<br>정보제공           | 유해·위험물질을 제조·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개조, 분해, 내부로 들어가는 작업 시 안전보건정보 (해당물질의 유해·위험성, 작업상 주의사항, 안전보건조치, 긴급조치 사항 등)를 제공하고 있는가?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법령위반<br>사항 시정<br>조치(지사) |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(지사) 하였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안전하고<br>위생적인<br>작업수행    | 산정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고 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험성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생시설<br>제공              |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설치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하도록 협조하고 있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(지사)

| 기관명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서울지역본부 |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2-6711-2841 |
| 서울북부지사 | 서울시 중구 칠패길 42(봉래동 1가) 우리빌딩 7층                     | 02-3783-8312 |
| 강원지사   |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(온의동)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               | 033-815-1011 |
| 강원동부지사 |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(교동, 정관빌딩) 3층                     | 033-820-2511 |
| 부산지역본부 |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(부곡동)                       | 051-520-0524 |
| 울산지사   |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8번길 5(신정동)                          | 052-226-0552 |
| 경남지사   |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(용호동)                          | 055-269-0552 |
| 경남동부지사 |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양산노동종합청사 4층                   | 055-371-7523 |
| 광주지역본부 |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빌딩 8,9,11층             | 062-949-8743 |
| 전북지사   |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(인후동) 고용노동부 종합청사 4층              | 063-240-8533 |
| 전북서부지사 |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(청사동) 2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63-460-3622 |
| 전남동부지사 |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61-689-4954 |
| 전남서부지사 | 전남 무안군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                      | 061-288-8705 |
| 제주지사  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(이도 2동)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           | 064-797-7502 |
| 충북지역본부 |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(구산동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32-510-0511 |
| 경기남부지사 |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, 10층, 13층 (이의동,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) | 031-259-7124 |
| 경기북부지사 |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                    | 031-828-1919 |
| 경기서부지사 |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(고잔동) 2층                      | 031-481-7513 |
| 경기동부지사 |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쇠골로 17번길 3 (금곡동) 소곡회관 2층              | 031-785-3322 |
| 부천지사   |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(상동) 대신프라자 3층            | 032-680-6518 |
| 대구지역본부 |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9,20층                    | 053-609-0522 |
| 대구서부지사 |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                     | 053-650-6833 |
| 경북동부지사 |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54-271-2034 |
| 경북북부지사 |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-23(임수동)                         | 054-478-8012 |
| 대전지역본부 |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(문지동)                        | 042-620-5611 |
| 충북지사   |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(가경동) KT빌딩 3층              | 043-230-7121 |
| 충남지사   |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창로 215(불당동)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            | 041-570-3423 |

# 도급사업

## 이것만은 지켜 주세요!



## ! 도급사업 이것만은 지켜 주세요

### ■ 중요성

-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일하던 수급인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, 추락, 질식, 화재·폭발 등 중대재해와 직업병 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.

\* (사고사례)

- OO제철: 제철공장 내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전로내 대화벽돌 축조작업 중 노 내에 유입된 불활성가스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수급인 근로자 5명이 사망
- OO해양: 선박 수리 작업장에서 액화암모니아 용기가 파열되면서 암모니아가 누출되어 수급인 근로자 2명이 사망

### ■ 도급작업의 종류

-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형태의 작업

\* 사무실 소재지가 도급사업장 밖에 있더라도 유지보수, 개조, 수리, 정비 등 도급작업이 도급사업주의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면 사내협력업체(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6항의 적용대상)에 해당됨

\*\* 부정기작업, 정기(긴 주기)적으로 실시하는 설비의 개조·수리·청소·검사 등의 작업

## !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의무 등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.

### ▶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·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.

- 모든 수급업체(하수급업체 포함)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합니다.
  -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, 작업 또는 작업장간의 연락방법,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,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,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.
- 협의체는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합니다.

### ▶ 작업장 합동·순회점검을 해야 합니다.

-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 이뤄져야 합니다.
  - ※ 건설업, 제조업, 토사석 광업, 서적·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,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,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이외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
- 합동점검은 수급인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  - ※ 건설업, 선박 및 보트건조업 : 2개월에 1회 이상

### ▶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·보건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.

- 도급인은 교육지원체계를 세우고 지도·지원해야 합니다.
- 도급인은 교육지원을 위한 장소·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.

### ▶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합니다.

- 도급인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해야 합니다
- 작업환경측정 시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를 입회시켜야 합니다.
-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

### ▶ 발파작업, 화재 및 토석붕괴 사고를 대비한 경보 운영과 수급인·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.

### ▶ 다음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·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.

- 토사·구축물·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
- 기계·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
-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
-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
-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
-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 작업을 하는 장소
-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
- 도급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
- 화재·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작업을 하는 장소
  - 가.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·용단작업
  - 나.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·용단작업
  - 다.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·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·용단작업
-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
-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
-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
-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
-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·해체·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
-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
-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
- 안전보건규칙 별표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·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
-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
- 전기 기계·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

### ▶ 안전·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
- 유해·위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개조, 분해 또는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(전자문서 포함)하여야 합니다.
  - 안전보건규칙 별표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·사용·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·위험성
  - 안전·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·보건상의 주의사항
  - 안전·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
-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 시작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- 위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(하수급인)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.

### ▶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,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(시정지시)를 하여야 합니다.

### ▶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-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.

### ▶ 수급인의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해야 합니다.

-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,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.



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